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상이군경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를 보완
- '91년도부터 적용하고있는 자동차부과기준의 변경(기통수 → 씨씨당)에 부합토록 개정
-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도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임.

4. 주요골자

- 자동차의 기준조정 : 4기통이하 → 2,000씨씨이하
-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추가 : 하지계통상이자+상지계통상이자
- 면제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소방공동시설세

5. 검토의견

- 신제장으로 국가유공자 자활론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1990년 12. 31개정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배기량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면제대상은 4기종이에서 2,000cc이하로 개정하여 법령의 내용과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제6조의2 제3항에 의거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을 과세면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계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 29분)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 을 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